

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

의안 번호	1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0. 14.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,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84조 및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괴정1동 사하시립도서관뒤 7개동 지역은 노인인구 492명에 비해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없으며, 또한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존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함.
- 나. 괴정4동 희망경로당은 '74년 3월에 준공된 건물(15평)이며, 현재 할머니경로당으로 사용중이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층으로 확대 신축하여 할머니 및 할아버지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1) 취득대상 재산현황

- 취득구분 : 건물 및 토지
- 위치 : 괴정1동 1040-53
- 건물면적 : 129.48㎡(39.2평) ▷ 3층
- 토지면적 : 95㎡(28.7평)
- 매입예상금액 : 130,000천원

2) 신축건물 현황

- 취득구분 : 신축
- 위 치 : 괴정4동 1130-14
- 신축면적 : 198m'(층별 30평) ▷ 2층
- 대지면적 : 229m'(69평)
- 신축예상금액 : 260,000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및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84조

나.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7조

공유재산관리계획

200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

○ 회계명 : 일반회계

구 분		합 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비고
	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 원)	
취	계	토지	1	95	55,100			1	95	55,100	
		건물	2	327.48	334,900			2	327.48	334,900	
		기타									
취	1. 매입	토지	1	95	55,100			1	95	55,100	
		건물	1	129.48	74,900			1	129.48	74,900	
		기타									
득	2. 교환 으로 취득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취	3. 기타 취득 (신축)	토지									
		건물	1	198	260,000			1	198	260,000	
		기타									
처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분	4. 매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분	5. 양여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분	6. 교환 으로 취득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사용허가 및 대부	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 : 천원)

재산의 표시				추정 금액 (평가액)	취득시기	취득사유	현소유자	취득재산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구 분	소 재 지	지 목	면 적(m ²)						
계	토지 : 1필지 건물 : 2개동		토지:95 건물:327.48	334,900					
토지	괴정1동 1040-53	대지	95	55,100	2005년 하반기	경로당 설치	배초강	당리동 317-16 사하구청장	

재산의 표시				추정 금액 (평가액)	취득시기	취득사유	현소유자	취득재산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구 분	소 재 지	구 조	면 적(m ²)						
건물	괴정1동 1040-53	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	129.48	74,900	2005년 하반기	경로당설치	배초강	당리동 317-16 사하구청장	
	괴정4동 1130-14	철근콘크리트	198	260,000	2005년 하반기	경로당 신축	-	당리동 317-16 사하구청장	